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박희영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무처장

우리 사회를 민주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한 민주화운동가들의 공로를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예우하겠다는 뜻이 담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명예회복법)은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보수진영의 저항은 훨씬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어 이 법은 올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 법은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올바르게 평가하고,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응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 법의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논란이 거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의 도전과 저항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 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상심의위원회의 9인 위원 구성과 비상임제도의 문제

현재의 위원회가 만 3년간 심의를 진행했는데도 1차 접수(2000.8.21~10.20)된 8,440건(보상 909건, 명예회복 7,531건)의 신청 사건에 대한 심의도 완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비상임위원들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몰이해로 말미암은 무더기 기각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용찬, 권희정, 류재을, 장재완, 신용길 열사 등이 기각되었고, 심지어는 관련자분과위원회에서 인정된 사건들이 본 위원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위원장조차도 상임이 아닌 제도 속에서 보상지원단이라는 공무원 조직만 있으니, 될 일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만일 상임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있고, 사무국이 설치되어 민간 출신의 사무국장이 있다면 좀 더 책임있는 심의가 될 것이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한 심의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학식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의 3부(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추천의 인사 중에는 반민주 인사들도 있다. 70년대와 80년대의 시대적 특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의 방식, 항거의 방식이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탐독했다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어떻게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는가, 노동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는가 등 민주화운동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바탕으로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며 사건을 기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기각되는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이 또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없다. 모두 실정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것이다. 극단적인 독재 권력 아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가보안법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수많은 사건들이 고문으로 날조·조작되었다는 것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실정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거나 민주화운동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기각된 사건들에 대한 구제조치도 미비하여 재심을

청구하여도 그 입증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이상 또 다시 억울하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구조는 꼭 개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명예회복조치나 응당한 보상금이 없거나, 사망 · 상이자의 경우 200만원에서 2억 9천만 원까지 그 편차가 너무 심한 문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면 그 동안 받아온 불이익처분과 차별대우를 금지해야 한다.(특별사면과 복권,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 수사 자료표의 해당란 삭제, 수형 인명표 폐기, 학사징계기록의 말소, 요시찰 인명부, 취업 제한, 여권 발급 등) 그러나 현행 법률로는 명예회복조치에 대한 명시가 없고, 인정된 경우에도 사망 · 상이의 경우에만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도 턱 없이 낮다. 보상금액 책정방식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여도나 공로를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교통사고 사망자와 같이 그 당시의 임금에 기초한 노동상실률에 따른 호프만식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예를 들면 수지 김 간첩사건의 경우는 국가배상 금액이 42억인데, 80년대 노동운동을 하다 사망한 윤용하 열사의 경우 그 당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억 3천만원이고, 70년대 사망한 전태일 열사의 경우 930만원이 된다. 상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70년대의 상이자는 보상금액이 적고, 의료기록이 남아있는 최근 사건의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형태로, 그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상이로 인정되어도 등급 외 판정자는 아무런 보상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는 수 십 년 동안 상이로 인해 받은 고통이 큼에도 현재 노동상실률이 없다는 논리인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최소한 상이로 인정된다면 평생 당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안하여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개선방향이 필요하다.

3.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는 대상자의 문제와 대상자 범위의 확대 문제

현행법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라 함은 사망 · 상이 · 유죄판결 ·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유죄판결이나 해직 · 학사징계의 경우는 인정이 되더라도 인정되었다는 통보만 있을 뿐 그동안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해직자의 경우 명예회복이 된다함은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고, 학사징계자의 경우는 복학을 시키고, 유죄판결자의 경우도 그에 준하는 보상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원직복직이나 복학이 어렵다면, 복직이나 복학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는 그에 합당한 조치가 없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야 할 대상자 중에는 위의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불이익 처분을 당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들은 관련자로 인정되는 것을 봉쇄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1일의 구류자는 관련자로 인정되지만 10여일 이상 구금되었다가 기소유예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관련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며칠의 구금생활을 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장기간의 수배생활을 한 경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취업이 거부된 경우(임용 제외교사 또는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 거부자 등), 강제징집을 당한 경우에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큰 피해를 당했음에도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조차 되지 않고 있기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4. 민주화운동의 시기에 대한 문제

현행법에는 1969년 8월 7일 이후의 활동만을 민주화운동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이전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에서 제외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민주화운동이 독재 권력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고 할 경우 원칙적으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맞서 투쟁한 것도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해외민주인사들에 대한 예우조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